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06. 4. 28. 법률 제7935호)에 따라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명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- 나. 정례회 및 임시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조항 신설(안 제3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제3항

4. 검토의견

지난 4월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내용으로

- 이번 지방자치법의 회기관련 개정의 의미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회기를 조정하도록 하여 의회 운용의 미를 살려 보자는 취지로 인식하게 하고 있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됨
- 우리구의회는 지난 2005. 5. 4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현재까지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(1·2차)와 임시회를 각각 운영하여 왔으며,
- 이번 개정안 내용에도 기존 연간 총 회의일수는 변함 없으며, 당초 올해 의회 운영일정안 대로 제1.2차 정례회를 합하여 38일 이내, 임시회는 42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

-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회기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